제2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2021. 8. 30.

行 政 委 員 會

專門委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64호로 2021년 7월 13일 차인영의원 외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규정(안 제3조 ~ 제4조)

다. 지원절차 및 환수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제6조)

라.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규정(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나. 예산조치 : 2021년 예산 반영

다. 입법예고(2021. 7. 16. ~ 7. 20./ 5일 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들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교육여건 격차의 최소화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위 입학준비금이란, 지원대상 신입생에게 입학 준비에 필요한 교복 등 물품을 자율적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며, 금년부터 서울시교육청-서울시-자치구간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공동 추진에 따라 우리 구는 2021년도 예산편성 시 270,120천원을 책정하여 편성되어 있으며,

지원대상 1인당 30만원, 재원부담은 서울시교육청 50% : 서울시 30% : 자치구 20%로 계획되어 있고, 그 지급방식은 아래와 같음.

입학준비금 지급방식

○ **지급절차**

서울시·자치구→교육청	⇒	학생→학교	⇒	학교→교육청	⇒	교육청→학생
보조금 교부		배정학교 입학 시 신청서 제출		신청자료 수합·제출		제로페이 어플로 입학준비금 상품권 발송

○ **지급방식 : 학생(학부모) 스마트폰 제로페이 어플로 '(가칭)서울시교육청 입학지원 상품권' 전송,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선지급 후결제)**

○ **사용범위** ('20. 10. 29.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내용에 따름)

구 분	의 류	스마트기기
구매범위	일상 의류, 교복, 생활복, 체육복	태블릿 PC
비 고	교복 구매 시 학교별 학칙에서 정한 교복 형태에 따라 추진	온라인 수업, 과제용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정의)에서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학교로 이는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가 해당되며,
  “입학준비금”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 등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함.
- 안 제3조(지원대상)에서 기준일 현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외국인 등록 포함)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제1호에서 영등포구 소재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을 그 지원 대상으로 특정하였으며, 제2호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외에서 우리 구 관내 학교로 전학하는 1학년 학생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안 제4조(지원금액)에서 입학준비금의 지원 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위 지원 금액은 차후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간의 지원대상, 지원물품 또는 분담 비율 등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고 또한 우리 구의 독자적인 지원책에 따라서는 그 지원 금액의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청장이 매년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임.
- 안 제5조(지원절차)는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 접수 방법, 적격여부 결정,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입학준비금 지원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6조(환수)는 입학준비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중복 지급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의 환수 규정이고,

- 안 제7조(다른 기관과의 협력)는 상위 조항의 입학준비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절차 등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이나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그 세부적인 방법 및 추진 절차 등에 관하여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협력·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현재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은 시 교육청과 각 자치구간 협의에 의해 본 조항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보임.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의 입학준비금 제도는 주민들의 가계소득 격차에 따른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 중·고등학교 입학대상자에게 보편적 교육복지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 위배사항이나 자구 등에도 문제는 없음.

참 고 자 료

1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 ⑦ 생략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4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